

의안번호	제105호
의결년월일	2007. 7. 23
의결사항	원안가결

발의자	최상길 의원외 2인
제출 년월일	2007. 7. 23.

제191회 보은군의의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
수신 보은군의회의회장

2007. 7. 23.

제목 제191회 보은군의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
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91회 보은군의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안건 1부. 끝.

발의자:최상길의원외 2인
(찬성의원서명 : 붙임참조)

의안발의찬성의원

의원성명	서명	비고
최상길	최상길	
박범출	박범출	
이달권	이달권	

제191회 보은군의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7. 23.

제안자 : 최상길 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
- 제191회 보은군의회(임시회) 회기를 2007. 7. 23일부터 7. 25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

2. 의사일정

- 2007. 7. 23(월) : 제1차 본회의
 1. 제191회 보은군의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 2.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
(기획감사실, 행정과, 주민생활지원과, 재무과, 민원과)
- 2007. 7. 24(화) : 제2차 본회의
 1.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
(주민복지과,환경산림과,농축산과,문화관광과,건설과,농업기술센터)
- 2007. 7. 25(수) : 제3차 본회의
 1.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
(재난관리과,경제사업단,보건소,상하수도사업소,시설관리사업소)
 2. 기타 조례안 등 일반부의안건